

#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6. 13) 상정
- 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6. 13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강 성 모)공보실장

가. 제안이유

-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 공포)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위원은 2년을 임기로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토록 함.(안 제2조)
- 위원회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안건은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위촉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일비 등을 줄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인가?	<input type="radio"/>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바, 본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  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  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 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 음

#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7호
의결 년월일	2006. 6. 16 (제127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6. 8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)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위원은 2년을 임기로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.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라.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안건은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마. 위촉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일비 등을 줄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##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시의원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4조(위원회 대행운영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일비 등)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부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예산법무과
입 안 자	담당과장	강성모
	담당팀장	신경동
	담당자	황성호(320-3513)